

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사무관리 추진 계획

2018. 4.

서울특별시

□ 목 차 □

I . 선거개요	1
II . 추진계획	2
① 선거사무지원반 구성·운영	2
② 법정 선거사무 완벽 추진	3
③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	5
④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	6
⑤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	7
III . 행정사항	7

[참고]

1. 선거 주요일정	8
2. 일정별 제출서식	9

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사무관리 추진 계획

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('18.6.13)가 공명정대하고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요일정에 따른 선거관리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선거 개요

○ 선거일 : '18. 6. 13.(수), 06:00 ~ 18:00

※ 사전투표 : 6.8(금) ~ 6.9(토), 06:00~18:00

○ 선출인원 : 총 560명

- 서울시 107명 : 시장 1, 시의원 110 (지역100, 비례 10)
- 자치구 448명 : 구청장 25, 구의원 423 (지역 369, 비례 54)
- 교육청 1명 : 교육감 1
- ※ 국회의원 보궐선거 2명 (노원병, 송파을)

○ 예상 유권자수 : 8,623,555명 ('17.12.31일 기준, 실제 유권자수는 '18.6.1일 확정)

- 19세 이상 주민등록자 8,347,115명, 외국인 선거권자 276,440명

○ 투표소 : 2,245개소 (관공서, 학교 등)

○ 소요예산 : 44,113백만원 (시비)

○ 주요 선거사무 일정

시행일정	요일	주요 사무	기준일
2. 13.부터	화	예비후보자등록 신청(시·도지사 및 교육감선거)	선거일전 120일부터
3. 2.부터	금	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시·도의원, 구·시의원 및 장의 선거]	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
3.15.까지	목	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	선거일 전 90일
4. 14.부터	토	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	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
5.22~5.26	화~토	선거인명부 작성	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간
5.24~5.25	목~금	후보자등록 신청 (매일 오전 9시 ~ 오후 6시)	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
5.31~ 6.13	목~수	선거기간(14일) ※선거운동기간 : 5.31~6.12	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
6. 8.~ 6.9	금, 토	사전투표소 투표 (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)	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
6. 13.	수	투표 (오전 6시 ~ 오후 6시), 개표 (투표종료 후 즉시)	선거일

〈 추진 방향 〉

- ◆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선거사무 추진체계 구축
- ◆ 차질 없는 선거사무 관리 및 운영
- ◆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
- ◆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 적극 전개

1 『선거사무지원반』 구성·운영

○ 기 간 : '18.4.2(월) ~ 6.13(수)

- ※ 행정안전부 『선거상황실』 설치·운영 (인원 : 9명, 기간 : '18. 2.5일~ 6월 말까지)
- (전화) 02-2100-8680~8682, (팩스) 02-2100-3459, (이메일).wisdoming@korea.kr

○ 장 소 : 市 자치행정과(행정관리팀)

- 선거사무(2133-5823, 5821), 주민전산(2133-5825)
- ※ 자치구는 자체실정에 맞는 선거사무지원반 구성·운영

○ 인 원

- 추진반장 : 자치행정과장(보좌관 : 행정관리팀장)
- 추진반원 : 8명(행정관리팀원으로 구성)

○ 체 계 : 행정자치부 ↔ 市지원반 ↔ 區지원반 ↔ 洞주민센터
(市선관위 협조지원) (區선관위 협조지원)

- ※ 자치구에서는 선거사무 추진관련 동향보고(區지원반 → 市지원반)등 철저

○ 주요사항

- 법정선거사무 추진 및 공명선거 활동 지원
- 선거관련 사건·사고 등 파악 및 종합관리
- 행정자치부·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·지원 등
- 법정선거업무 추진상황 점검(자치구 및 각 자치구별 2개동 현장방문)
- 사전투표일(6.8.~6.9), 투표일(6.13)에는 「투·개표 지원상황실」로 전환
- ※ 자치구 및 동 선거담당 소통채널(SNS) 개설 : 신속한 질의응답, 정보공유, 협조사항 전달 등

2] 법정 선거사무 완벽 추진

① 선거인 명부 작성

선거인 명부 작성(열람·이의신청) 및 확정

- 기 간 : 5.22. ~ 5.26.(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) ※ 확정일 : 6.1(금)
 - 대 상 자 : 선거권이 있는 주민등록자
 - 주요내용
 - ▶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
 - 작성(5.22) 및 확정(6.1) 상황통보서와 전산자료 송부(행자부, 선관위)
 - ▶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
 - 기 간 : 5.27. ~ 5.29.(3일간) 09:00~18:00 ※ 인터넷열람 24시간 가능
 - 내 용 : 선거인명부 등재여부, 등재번호, 투표소 위치 등
 - 방 법 : 자치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명부 열람 후 구청장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
- ※ 자치구 별 「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시스템」 구축·운영

거소투표신고인 명부 작성 및 확정

- 신고기간 : 5.22. ~ 5.26.(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) ※ 확정일 : 5.27(일)
- 대 상 자 :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사전투표일,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
- 주요내용
 - 작성(5.22.) 및 확정(5.27.)상황통보서와 전산자료 송부(행자부, 선관위)

《 거소투표 신고 대상 및 방법》

- 대 상 :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합정에 거주하는 군인·경찰, 병원·요양소·수용소·교도소·구치소 기거자,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, 공직 선거관리규칙에 규정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등
- 방 법 : 주민등록지 구·동에 신고 서식에 의거해 서면으로 신고

② 선거사무 교육

- 區·洞 선거담당(전산담당) 대상 선거사무 교육 완료
 - 일시/장소 : 3. 27.(화) 10:00~18:00 / 세종대 대양홀
 - 대 상 : 區·洞 선거담당 및 전산담당 공무원 약 955명
 - 주요내용 :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처리 제반사항 등

③ 『법정선거서식』 제작 및 자치구 배부

- 시기·수량 : 4월 중 (* 市 자체제작)
- 제작대상 : 선거인명부 표지 등 법정선거 서식
 -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서,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공고문, 거소 투표신고서, 선거인명부 서식 등
 - * 市에서 제작하여 배포하지 않는 서식은 자치구에서 자체 제작

3]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

① 오프라인 홍보

-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시안 제작 후 현수막 제작·홍보탑 설치
 - 현수막 : 지하철 출입구,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사거리 등에 설치
 - * 자치구는 서울시가 기획한 현수막 시안으로 자체 제작 및 게시
 - 홍보탑 : 서울광장, 서울역, 청계광장 등에 설치
 - * 설치 장소 사전 협조 완료 : 서울역사, 서울시설공단

《 제19대 대통령선거 현수막 (예시) 》



서울특별시

미래도시 용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

5월 9일(화) 제19대 대통령선거

투표할 권리, 놓치지 마세요!

사전투표: 5월4일(목)~5월 5일(금) 오전 6시~오후 6시 | 선거일 투표: 5월 9일(화) 오전 6시~오후 8시

《 제19대 대통령선거 홍보탑 (예시)》



- 옥외전광판, 지하철 구내방송, 버스스크린 등 홍보
 - 전광판(06시~24시까지)에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동영상 표출
 - 지하철 구내방송 및 버스스크린 홍보는 출퇴근시간 집중방송 실시
- 아파트 옥내방송 실시 및 5월 자치구 소식지 게재
- 투표참여 홍보 본청 및 자치구 통화 연결음 설정

② 온라인 홍보

-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카드뉴스 등 온라인 홍보물 제작

《 제19대 대통령선거 홍보물 (예시)》



- 라이브서울 등 영상매체, 서울시 대표 SNS(블로그, 페이스북, 카카오토리 등), 서울시 홈페이지 활용 홍보

4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

인력 지원

- 선전벽보 첩부, 투표안내문 발송 인력
- 동위원회 간사·서기, 투표관리관·투표 및 개표 사무종사원 등

· 투표 및 개표 사무종사원 인력지원 (서울시 선관위 요청)

- 13개 구 1,330명 배치 요청 (투표 1개 구 100명, 개표 12개 구 1,230명)
- ※ '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 투·개표 사무 인력지원 : 5개 구 549명 지원

시설·장소 지원

- 각종 교육·회의장소 및 후보자 선전물 발송작업 장소 제공
- 투표소·개표소 설치장소 제공 등

투표소 사전점검

- 기 간 : '18. 6. 1. ~ 6. 7.(7일간)

- 대 상 : 사전투표소(423개), 투표소(2,245개)

※ 사전투표소는 행정동 별 1개소이나, 강동구 둔촌 1동 사전투표소 미설치 (재건축 이주로 잔여 인구 10명)

○ 점검방법

- (자치구)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전체 투·개표소에 대한 전수 점검
- (서울시) 점검반 편성 후 사전 및 투표소 현장 확인점검

○ 점검내용

- 투표소 설비 및 전기·통신장비 운영, 소방·경비 등 안전관리
- 임시경사로 등 장애인 등의 투표편의 시설 설치 확인 등

투·개표 지원 상황실 설치·운영

- 일 정 : 6.13.(수) 05:00 ~ 개표 종료시까지

- 구 성 : 행정국장(상황실장), 자치행정과장(보좌관), 자치행정과 전직원(반원)

- 장 소 : 市 3층 대회의실

○ 주요내용

- 투·개표 진행상황 파악 보고 및 사건·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
- 유관기관 간 긴밀한 상황 유지 및 협조 체제 구축(행정자치부↔市↔區)

※ 사전투표 지원 상황실 설치·운영 (6.8.~6.9, 05:00~20:00, 市 7층 회의실)

5]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

○ 자체 공직기강 확립·점검활동 강화

- 기 간 : 5.28. ~ 6.5. (9일간)
- 대상기관 : 본청, 본부·사업소, 투자·출연기관, 자치구 등
- 점검사항 : 선거중립 훼손행위,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
- ※ 본청은 총무과 인사과 주관, 사업소, 투자·출연기관은 감사위원회 주관 특별점검 실시

○ 선거개입 오해 소지 사전 방지

- 자치단체장 활동 및 각종 행사 개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후 실시
- 소속 기관 직원과 통·리·반장 선거중립 감독 철저

III

행정 사항

○ 자치구별 자체 선거사무 추진계획 수립 및 선거사무추진반 구성·운영

- 선거사무 추진계획 수립 및 선거사무추진반 구성 결과 보고 : '18.4.13.

○ 사건·사고 등 각종 중요 사안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유관기관간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

- 체 계 : 행정자치부(공명선거지원상황실) ↔ 市(선거사무지원반) ↔ 區
- 대응방법 : 비상연락망 구축, SNS 활용한 신속 대응 및 연락

▪ 서울시 상황실 : 02-2133-5823(5821,5825)

- (팩스) 02-2133-0777, (이메일) yjmove@seoul.go.kr, kimey02@seoul.go.kr

▪ 행정안전부 상황실 : 02-2100-8680~8682

- (팩스) 02-2100-3459, (이메일) wisdoming@korea.kr

※ 자치구는 자체실정에 맞는 선거사무지원반 구성·운영

참고 1

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('18.6.13) 주요사무일정

시행일정	요일	실시사항	기준일	관계법조
1. 15.까지	월	인구수 등의 통보	인구의 기준일(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) 후 15일까지	법\$14, §60의2① 규\$2①②, §118①
2. 13.부터	화	예비후보자등록 신청 (시·도지사 및 교육감선거)	선거일전 120일부터	법\$60의2①
3. 2.부터	금	예비후보자등록 신청 (시·도의원, 구·시의원 및 장의 선거)	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	법\$60의2①
3. 15.까지	목	각급선거관위 위원,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, 주민자치위원, 통·리·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	선거일전 90일부터	법\$60②
		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	선거일전 90일(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: 5. 14. (월))까지	법\$53①②
3. 15.부터 6. 13.까지	목 수	의정활동 보고 금지	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 까지	법\$111
4. 1.부터	일	예비후보자등록 신청 (군의원 및 장의 선거)	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	법\$60의2①
4. 14.부터 6. 13.까지	토 수	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	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 까지	법\$86②
5. 22.부터 5. 26.까지	화 토	선거인명부 작성	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	법\$37, 규\$10
		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		법\$38, 규\$11
		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		법\$65⑤
5. 24.부터 5. 25.까지	목 금	후보자등록 신청 (매일 오전 9시 ~ 오후 6시)	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	법\$49 규\$20
5. 31.	목	선거기간개시일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	법\$33③
6. 1.에	금	선거인명부 확정	선거일전 12일에	법\$44①
6. 8.부터 6. 9.까지	금 토	사전투표소 투표 (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)	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	법\$155②, 158
6. 13.	수	투표(오전 6시 ~ 오후 6시)	선거일	법 제10장
		개표(투표종료 후 즉시)		법 제11장
8. 12. 이내	일	선거비용 보전	선거일 후 60일 이내	법\$122의2①, 규\$51의3②

참고 2

일정별 보고사항 및 제출서식

일 정	보 고 사 항	보고 기한	비 고
5. 22. (선거일 전 22일)	○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(기타 통보서상의 연령별 현황 포함)	5. 22.	RIUS 자료 메일 송부
5. 27. (선거일 전 17일)	○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	5. 27.	“
6. 1. (선거일 전 12일)	○ 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	6. 1.	“
6. 3. (선거일 전 10일)	○ 투표소 공고상황 (투표소 설치 장소, 건물 층수별 현황)	6. 3.	양식에 따라 메일송부
6. 4. (선거일 전 9일)	○ 사전투표소의 명칭·소재지 등 공고	6. 4.	“
6. 10. (선거일 전 3일)	○ 투·개표사무원 위촉·공고상황	6. 10.	“
6. 12. (선거일 전 1일)	○ 투·개표소 설치상황	6. 12.	“

[서식 1]

[별지 제9호서식의(가)] (규칙 제10조제6항 관련) <개정 2015.12.24>

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(5.22.)

투표구명	인 구 수 (2018년 5월 22일 현재)	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			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 율(%)	세 대 수	비 고
		계	남	여			

- 주: 1.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.
 2. "인구수,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, 세대수"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, ()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.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위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, ()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(.)로 구분한다.
 3.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.

연령별 현황(5.22.)

(단위 : 명)

투표구명	계			19세			20대			30대			40대			50대			60대			70대 이상					
	계	남	여	계	남	여	계	남	여	계	남	여	계	남	여	계	남	여	계	남	여	계	남	여			

※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수를 포함하여 작성하되, 동일서식으로 별지 작성

[서식 3]

[별지 제9호서식의(나)] (규칙 제16조제1항 관련) <개정 2015.12.24.>

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(6.1.)

투표구명	① 인구수 (2018년 5월 22일 현재)	②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	③ 직권수정에 의한		④ 이의·불복신청등의 결정에 의한		⑤ 확정된 선거인 수	⑥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자수	⑦ 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등재자수	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율(%)	⑧ 세대수	비 고
			감	증	감	증						
		계										
		남										
		여										

주 : 1.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.

①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.

②란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상의 선거인수(거소·선상투표신고인수를 포함한다)를 기재한다.

③란은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사망자·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.

④란은 선거인명부열람에 의한 이의·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.

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 ③·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.

2. ①부터 ⑧까지의 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, ()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.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(⑥⑦란 제외)하되, ()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쉽표()로 구분한다.

3.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.

4. 이 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 <선거인명부수정상황>과 별지 제2호 <선거인명부확정내역>을 작성·첨부한다.

<별지 제1호>

선거인명부수정상황

투표구명	선거인명부 등재번호	성 명	수정내용		수정사유	비 고
			수정전	수정후		

주 : 1. 수정사유란은 이의신청·불복신청등에 대한 결정, 오기, 누락, 이중등재, 사망,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기재한다.

2.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던 자가 "세대주"인 때에는 비고란에 "세"라고 기재한다.

3.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각각 "주민등록 재외국민" 또는 "외국인"이라 적는다.

연령별 현황(6.1.)

(단위 : 명)

투표구명	계			19세			20대			30대			40대			50대			60대			70대 이상					
	계	남	여	계	남	여	계	남	여	계	남	여	계	남	여	계	남	여	계	남	여	계	남	여			

※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수, 외국인수(지방선거만 해당)를 포함하여 작성하되, 재외국민수, 외국인수는 동일서식으로 별지 작성

※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 작성

<별지 제2호>

선거인명부확정내역(6.1.)

투표구명	확정된 선거인 수 (①+②+③)	①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· 거주불명자 선거인수					②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					③ 외국인 선거인 수	비고	
		계	사전 투표소 또는 투표소 에서 투표할 선거인	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	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	재외 투표소 에서 투표할 선거인	계	사전 투표소 또는 투표소 에서 투표할 선거인	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	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	재외 투표소 에서 투표할 선거인			
		계					계							
		남					남							
		여					여							

주 :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.

①란은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수를 기재하되,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, 거소·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,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(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)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
②란은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를 기재하되,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, 거소·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,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(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)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,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, 거소·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은 동시선거에서 일부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(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자)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그 수를 기재한다.

③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인선거인수를 기재한다.

[서식 4]

1 투표소 공고상황(6.3.까지)

○ 투표소 설치 장소 현황

구 분	계	설 치 장 소					
		학교시설	관공서	주민회관	공공·시설	민간시설	기타
투 표 소	개소						
장애인 편 의	승강기 설 치	개소					
	안 내 도우미	명					

※ 기타 :

○ 건물내 설치 투표소 층수별 현황

구 분	계	건물 층수별				※임 차 투표소수
		지하	1층	2층	3층이상	
투 표 소	개소					
장애인 편 의	승강기 설 치	개소				
	안 내 도우미	명				

2 사전투표소 현황(6.4.까지)

구 분	계	건물 층수별				통신망구성방식	
		지하	1층	2층	3층이상	국가정보통신망 이용	전용망 설치
투 표 소	개소						

[서식 5]

투·개표사무원 위촉·공고상황(6.10.까지)

○ 투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

계	국 가 공무원	지 방 공무원	교직원	금융기관 직 원	정부투자 기관직원	지방공사· 공단직원	일반인
명							

○ 개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

계	국 가 공무원	지 방 공무원	교직원	금융기관 직 원	정부투자 기관직원	지방공사· 공단직원	일반인
명							

[서식 6]

투·개표소 설치상황(6.12.까지)

구 분	합 계	장 소 별					
		학교시설	관공서	주민회관	공공시설	민간시설	기타
투표소(개소)							
개표소(개소)							

※ 기타 :

[서식 7]

사건.사고 발생 보고(즉보)
(미담, 특이사항)

수 신 :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

발 신 : ○○시·도 ○○과장

제 목 :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건(사고) 발생보고

1. 사건(사고) 개요

- 일시, 장소, 사고경위(내용), 조치사항

2. 조치(향후)계획

- 자치단체, 검·경, 선관위 등 관계부처의 조치계획 및 건의 사항 등